

지방 선거 인쇄물은?

오는 5월31일에 제4회 동시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인쇄업체에 있어 선거는 곧 특수다. 특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원들의 후보자 수가 다른 선거보다 월등히 많아 인쇄물량은 몇 배에 달한다. 또한 5·31 선거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가 이뤄지는 첫 선거이기 때문에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평균경쟁률인 2.5대 1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대1, 혹은 7대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포함
200억원 대
예상**

2002년보다 선거인수 150만명 이상 증가

5·31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영주자격 취득 후 만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도 처음으로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번에 투표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6500명 선으로 그리 많지 않더라도 편입되는 만 19세의 투표권자가 61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선거인수는 자연 증가분보다 크게 늘었다. 같은 맥락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인수를 2002년 제3회 지방 선거 때보다 150만명 이상 증가한 약 37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참고로 2002년도 지방선거의 선거인수는 3474만 여 명이었고 2004년 총선거의 선거인수는 3559만 여 명이었다. 아울러 이번 선거부터는 시·도의원선거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가 구·시·군의원 선거에도 도입되며 지역구의원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수만큼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써 유권자가 시·도지사,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구·시·군장,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총 6매의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1인 6표제가 됐다. 선거인수의 증대와 투표용지가 늘어난 것도 인쇄물 증가를 불러온다.

기초의회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선거구 축소

이번 선거부터는 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던 구·시·군의원선거구를 시·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2002년 4331개에 달했던 선거구는 3414개로 줄었다. 또한 선거법 개정으로 소형인쇄물과 선거공보 등 2종으로 구분됐던 후보자 선거홍보물이 선거공보 1종으로 통·폐합됐다. 소형인쇄물과 선거공보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이를 1종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는 선거 인쇄물 감소 요인이다. 다만, 17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지만 시기적으로 늦어 활성화되지 못했던 예비후보자 홍보가 이번 선거에 본격 도입됨으로써 2002년 지방선거 때 없었던 인쇄 홍보물을 다량 쏟아내고 있다.

선전벽보,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명함·홍보물이 주축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인쇄물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당내경선 홍보물 등을 시작으로 선전벽보, 선거공보, 투표용지, 투표용지 안내문, 부재자투표 인쇄물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대부분 인쇄물이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발송용 봉투도 엄청난 양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명선거포스터와 각종 선거 안내물 등을 제작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하는 선거 관련 인쇄물은 1도 인쇄가 대부분으로 그리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한다. 이에 인쇄 업체가 선거특수로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쇄물은 4색으로 인쇄되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명함 및 홍보물 등이라고 할 수 있다.

3414선거구에서 총 3867명의 대표 선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16명,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광역의회의원 655명, 광역의회의원 비례대표 78명, 기초의회의원 2513명,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 375명 등 총 3867명이 선출된다. 선거구는 광역자치단체장 16개, 기초자치단체장 230개, 광역의회의원 655개, 시군구의원 1028개이며 모두 합할 경우 3414개가 된다. 시군구의회 선거구가 1028개인 것은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기초의회 의원 비례대표로 375명이 각각 따로 지명되는 한편 총 2513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지만 각각의 선거구에서 2~4명의 기초의원을

5·31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영주자격 취득 후 만 3년 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도 처음으로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번에 투표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6500명선으로 그리 많지 않더라도 편입되는 만 19세의 투표권자가 61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선거인수는 자연 증가분보다 크게 늘었다.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의 경쟁률은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거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소수 3당은 전통적인 지지층이 밀집한 곳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내며 각 지역에 1~2인의 무소속 후보자들이 출마할 것을 가정할 경우, 약 6대 1의 경쟁률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전국에서 2만4천여명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전벽보…246만장 36억원에 달할 듯

선전벽보는 길이 53cm, 너비 38cm 규격의 $100g/m^2$ 이내의 용지에 4색도 이하로 인쇄된다. 동 및 읍에 있어서는 인구 1천인에 1매, 인구 2만인을 넘는 면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인구 1만인을 넘는 면에 있어서는 인구 200인에 1매가 인쇄된다. 단 인구밀집상태 등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 때 우리나라 인구 4850만명을 시군구의회 선거구인 1028명으로 나누면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약 4만7천명이 된다. 이럴 경우, 1개 선거구에 500인 기준으로 약 100곳에 선전벽보가 부착된다고 볼 수 있다.

투표는 총 6개가 이뤄지지만 비례대표 의원용 선전벽보는 제작되지 않으므로 부착되는 선전벽보는 총 4종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의원 등의 4개 선거에서 평균 6명의 후보가 나올 것으로 가정해 보면 1곳에 보통 24장의 선전벽보가 부착된다. 즉, 1028개 선거구 내 100곳에 각각 24장이 부착되므로 선전벽보 총 인쇄물량은 246만7200장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전문 인쇄업체에 의뢰해 작업단가를 산출한 결과, 총인쇄비는 42억657만6천원어치에 달했다. 여기서 용지 가격을 빼고 인쇄판비, 인쇄비, 재단비 등만 계산할 때는 36억5145만6천원이 된다.



선거공보…자치단체장 90억원, 자치단체 의원 60억원 상회

선거공보는 길이 27cm, 너비 19cm의 이내로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지질과 중량에는 제한이 없다. 책자형선거공보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 데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는 12면 이내로, 광역 및 기초의원의 후보자는 8면 이내로 제작할 수 있다. 6명의 후보가 나온다는 가정 하에 이를 3700만여명의 유권자에게 배포할 경우, 광역 및 기초자체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의 선거공보는 각각 2억2200만부 씩 제작된다. 12페이지 분량에 종이와 재질에는 제한이 없지만 이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100g/m² 아트지로 인쇄할 경우를 금액으로 추산한 결과,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홍보물은 각각 124억4200만원 어치에 달해 총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용지 가격을 뺀 경우에는 각각 47억7270만원어치가 인쇄돼 90억원 대가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8페이지 분량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의원 선거 홍보물도 100g/m² 아트지로 인쇄할 경우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각각 83억3600만원어치, 총 160억원 대가 된다. 여기서 용지 가격을 뺀 경우에는 각각 31억4120만원어치가 인쇄돼, 총 인쇄비는 6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투표용지…2억2천만매 약 1억원어치

투표용지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3700만 유권자에 맞춰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6종류의 투표용지가 총 2억2200만장 인쇄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5647만원이 되고 여기서 용지가격을 뺀 경우에는 9147만원어치가 된다.

당내경선흥보물…200만부 5천만원

예비후보자 명함·홍보물…4억·5억원어치 인쇄될 듯

선거에 앞서 당내경선과 예비후보자의 홍보 인쇄물도 일부 발행된다. 당내 경선자는 길이

지방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쇄비는 용지가격을 제외할 경우, 선전벽보 36억원, 선거공보 150억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10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물 20억원 등 총 200억원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모든 후보자들이 같은 조건으로 인쇄물을 발행했을 경우를 산정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27cm, 너비 19cm 이내의 기준에서 8페이지 4색도 이내의 당내경선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인쇄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120일전부터 길이 9cm, 너비 5cm의 예비후보자 명함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또한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의 사각형 종이에 8면 4색도 이내의 예비후보 홍보물을 선거구안 세대수의 1/10(2만장) 이하의 범위에서 배포할 수 있다.

당내경선에 참여자를 100명으로 추산하고 8페이지의 100g/m² 아트지로 당내경선 홍보물을 200만부 발행할 경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80만원어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용지가격을 뺀 경우에는 4680만원어치가 된다. 예비후보자 명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 약 1200명의 예비후보자들이 각 지역에서 1인당 5만부를 발행한다고 보면 전국적으로는 6천만장이 인쇄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명함을 250g/m² 아트지로 발행할 경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8억5260만원에 달하고 용지 가격을 제외할 경우에는 4억3860만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1200명의 예비후보자가 8페이지의 홍보물을 100g/m²로 2만장 한도 내에서 전부 발행했을 경우, 전국에서 2400만부, 12억660만원어치가 발행될 것으로 추산된다. 용지가격을 뺀 경우에는 5억6160만원어치가 된다.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관련 홍보 포스터, 선거안내문, 부재자 투표 안내문, 발송용 봉투 등의 관련 인쇄물을 약 20억원어치 이상 제작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지방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쇄비는 용지가격을 제외할 경우, 선전벽보 36억원, 선거공보 150억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10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물 20억원 등 총 200억원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모든 후보자들이 같은 조건으로 인쇄물을 발행했을 경우를 산정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감준 차장 kjcho@print.or.kr

